

〈연구동향〉

宋代 家族制度에 대한 연구동향

남은혜*

I. 첫머리

중국사회를 일컬어서 ‘家天下’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국의 사회구조는 예로부터 “家”가 사회의 중심축이었고, 세대 간에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家’라는 것은 중국사회 구성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개념과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家”라고 함은 家系 또는 家計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념적 혹은 현실적 집단 내지는 그 집단의 생활을 유지하는 재산의 총체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家”는 사람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家”를 이끌고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II. 연구동향

중국 가족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쟁은 滋賀秀三¹⁾과 仁井田陞²⁾을 중심으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創文社, 1981).

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중국 가족의 형태와 구성, 가부장권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벌이면서 서로 대립된 견해를 펼쳐왔다. 더욱이 滋賀秀三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中國家族法の原理』에서 중국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모습과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일반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가족공동재산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권리와 처리 방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족공동재산의 법적 구조를 해명하는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해 공동재산인 가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각자 처한 신분에 따라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는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추구하는 데에 이 책의 역점이 두어졌다. 특이한 것은 논술의 축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들이 기존의 일본 법학계에서 사용해 온 틀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면서, 오로지 가족생활의 私法的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家の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있는 데에서 공권력이 사법 관계에 개입하는 바가 적은 중국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仁井田陞 역시 중국 가족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 가족제도의 모습을 법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中國法制史研究』(가족편)에서는 송대 가산법에 있어서의 여자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송시대가 되면 여자는 남자와 대등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여자는 남자와 공동으로 가산의 분배에 관여하였으며 분배액은 남자의 반으로 되어 있었다. 첩은 가산공유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자는 그 부친의 생전이든 그렇지 않든, 재산공유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송대 여성의 상속에 관해서는 滋賀秀三과 仁井田陞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논쟁의 초점은 딸이 재산을 받는 것을 아들의 그것과 동일한 상속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딸도 아들과 分産하여 아들 몫의 半을 받는다는 남송대 법령의 존재 때문이다. 그 당시 재산을 나눌 때 均平함만을 중시하여 嫡庶男女 구분 없이 제비뽑기로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잘못하면 家廟를 딸이 뽑게 될 수도 있다면서 ‘婦承夫分 女承父分’이라고 한 법률의 조항

2) 仁井田陞, 『唐宋法律文書の研究』(清水弘文堂, 1937); 『中國法制史研究』(가족편)(岩波書店, 1979).

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또 袁采는 ‘有分’인 孤女에게는 지참금을 가능한 한 후하게 주어야 하고, 田産을 받을 자에게는 法條에 따라 分給해야 하는데, 당장 인색하게 하면 출가한 후에 반드시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딸의 상속분이 분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고 법적 강제성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滋賀秀三은 법령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양자와 친딸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고, 딸의 재산 계승은 우연적이거나 상속제도 외의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그리고 仁井田陞는 송대의 경우는 분명하게 딸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滋賀秀三과 仁井田陞의 대립된 견해는 각 견해를 따르는 후학들에 의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여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쉬양지에(徐揚杰)³⁾는 가족이라는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지탱돼 온 전통 중국사회의 가족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가족제도사 연구의 방법과 대상, 가부장제 가족의 형성과 해체 과정, 하나라에서 한·당·송을 거쳐 아편전쟁 이후 봉건가족제도의 붕괴까지를 다루고 있어 중국 가족제도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의 성격 규명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중국 가족사를 연구함으로써 가족을 시대적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해 사회변동의 능동적 주체로 올려놓았다. 더욱이 송대 이후 同居共財가 중요한 형태를 띠는 근대봉건가족제가 형성된 직접적 요인으로 이것의 형성을 강력히 제창한 理學家들의 주장과 정부 측의 원조를 꼽으면서 근대봉건가족제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族田의 설치, 祠堂의 건축, 가보(家寶)의 편찬은 지주계급이 경종수족(敬宗收族)의 원칙에 따라서 가족제를 재건하는 주요 방법이자 경종수족을 실천한 결과 나타난 가족제의 주요 내용들이다. 또한 이들 내용이 송원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완성되고 보편화되어 갔다는 점은 송원대에 근대봉건가족제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쉬양지에,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아카넷, 2000).

黃寬重⁴⁾은 남송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四明의 高氏 가문의 興亡盛衰를 살펴보면서 송대 사대부 가족의 발전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사대부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고씨 가문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의 가계를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문의 공명 획득과 발전을 위하여 고씨 집안의 아녀자들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였으며, 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동거공제 가정이 사대부 보다는 농민이나 일반 서민 가정에서 행해지기 쉬웠지만, 사대부 집안에서도 동거공제 유지를 위하여 아녀자들의 희생과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atricia Buckley Ebrey⁵⁾는 士大夫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인 家族과 財産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사함으로써 양극화된 사대부에 대한 관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도 『원씨세법』을 통해 송대 사회 경제사의 자료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씨세법』이 송대 가족제도 뿐 아니라 중국 전체시기의 가족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杜正勝⁶⁾은 역대 가정의 수와 가정의 구조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전통 가정을 “漢型”, “唐型”으로 나누었다. “漢型”은 부부 및 그 자녀로 구성된 핵심 가정을 주로 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형제자매 동거자는 더욱 적은 것을 말하였다. 또 “唐型”은 자손이 대체로 호적을 같이하는 동거공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후에 “唐型”에 대해 이미 결혼한 형제의 동거공제가 가정의 특색이며 直系의 三代 성원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송대는 “漢型”과 “唐型”의 절충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

4) 黃寬重, 「家族의 興亡盛衰와 社會 紐帶 關係 - 宋代 四明高氏 家族의 事例를 中心으로」, 『중국사학회』 27(2003).

5) Buckley Patricia Ebrey, 배숙희 옮김, Family and Property in Sung China: Yuan Ts'ai's Precepts for Social Life(송대 가족과 재산-사회 생활을 위한 원씨의 훈계), press Princeton Univ. 1984.

6) 杜正勝, 「傳統家庭試論」, 『大陸雜誌』65(1982).

명확한 송대의 가정 형태는 그려내지 않고 있다.

宋元期の 累世同居를 논급한 연구는 많은데 최근의 연구성과로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中島樂章⁷⁾의 저서를 보면 동거공재라는 용어에 대해 죽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合籍의 형태라고 서술하면서 현실적으로 사대부의 경우 과거에 합격된 후, 3년마다 옮겨 다니는 관료생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조부모, 부모, 형제간의 동거는 거의 어려우므로 동거공재란 사대부 가정보다는 농민이나 서민 가정에서 행해지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鈴木滿男⁸⁾은 九世同居로 알려진 절강성에 있는 名家인 鄭氏 집안을 중심으로 이들이 300년 이상이나 구세동거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송대가 儒教再興의 시대였음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주자학으로 교육받은 학자나 관인이 재건된 고대의 가족도덕을 열심히 민중에게 가르치고 장려했기 때문에 동거공재에서 더 나아가 구세동거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거대한 家를 오랫동안 다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력과 뛰어난 재정능력을 들고 있다. 동거하면 孝悌忠信을 실현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거의 필요성에 대해 유교적 관점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邢鐵⁹⁾도 가산 계승 방식과 제자 평균 석산 방식, 부녀의 가산계승권 등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이는 가족원들이 공동으로 모은 가산을 계승하고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가족의 경제적 관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 가족제도 가운데서도 부녀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白凱¹⁰⁾은 송대부터 중국 가족 내에서 차지한 부녀자의 재산권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거공재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녀자의 지참 재산은

7) 中島樂章, 『宋代社會の空間とコシニケシ』(級古書院, 2006).

8) 鈴木滿男, 「九世同居-中國 浙江省의 어느 儒教家族의 歷史」, 『법사학연구』 15(1994).

9) 邢鐵, 『家産繼承史論』(雲南大學出版社, 2000).

10) 白凱, 『中國的婦女與財產: 960-1949』(上海書店出版社, 2007).

합법적인 사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녀자의 권리 가운데서도 처의 奩産, 즉 지참재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郭麗冰¹¹⁾은 여자가 시집갈 때 친정에서 딸려 보낸 재산인 지참재산은 보편적으로 국가에서도 법률 조문을 통해 여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본학자 高橋芳郎¹²⁾은 여성의 지참재산은 법적으로는 남편과의 공동재산이지만 改嫁 시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전승된다는 점에서 지참재산을 아들의 방재와 같은 혼인비용이 아니라 신부 측의 분할상속 재산과 성격이 같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지참금을 혼인비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지참재산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한 高楠¹³⁾은 「南宋母親身后的奩産歸屬」에서 남송 시기,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구성원 사이에는 항상 모친의 지참재산의 분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고, 사돈 사이 또한 지참재산으로 법정에서 대질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송대가 되면 다원화 되고, 가족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또한 지참재산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문이 없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더욱이 관원은 법의 집행과정 중에 쉽게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판결했기 때문에 지참재산에 대해 자율적이었고 인정에 따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한다. 「宋代家庭中的奩産紛糾」에서는 송대 사회에서 이 지참재산이라는 것은 딸이 간접적으로 친정의 가산 분배 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적인 출처가 없었던 중국의 고대 여성과는 달리 송대에는 지참재산을 가짐으로 딸의 혼인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또 그것을 사회에 허가받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지참재산에 대해 타인의 간섭이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였다. 이

11) 郭麗冰, 「宋代婦女奩産權的探討」, 『廣東農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21(2005).

12) 高橋芳郎, 「奩産是誰的東西 - 以南宋爲中心」, 『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2008).

13) 高楠, 「淺談宋代的家庭立嗣紛糾」, 『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2002); 「宋代家庭中的奩産紛糾」, 『中國社今經濟史研究』(2004); 「南宋母親身后的奩産歸屬」, 『广西社今科學』(2006); 「南宋民事案件執行狀況考述」, 『河北大學學報』(2006); 「宋代家庭中的共有財產紛糾」, 『中國史今歷史評論』(2007).

런 소송행위는 자신과 관련된 법적인 관념과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宋代家庭中的共有財産紛糾』에서는 송대 상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의 발달로 동거공재 하에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공유 하던 재산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 관념이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 숙질 사이에 공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런 다툼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南宋民事案件執行狀況考述』을 통해서 남송대 민사 안건으로서 재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남송 정부는 재산과 관련한 민사 안건을 다룰 때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강력한 도덕론을 가지고 법을 집행했고, 재판관의 공정한 판단력으로 애착을 가지고 사법적 경영을 하였는데, 그것은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인정과 도리, 천리에 근거한 판결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高楠은 『淺談宋代的家庭立嗣紛糾』에서 立嗣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송대 가정에서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 후계자를 세웠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봤을 때 적자 가정의 지위는 아주 공고했고 이것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으며 적자 가정의 모습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람들은 제사나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후계자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 때문에 입사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송대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중국가족제도에 대한 활발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陸貞任¹⁴⁾의 논문을 통해 송대 가족제도의 모습과 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宋代‘共財’概念과 家産所有權』에서는 공재에 대한 가족의 지위 또는 권한은 상속권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부자간 또는 직계 가정의 재산소유관계는 상속원리와 상속권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14) 陸貞任, 『宋代 養子の 재산 계승권』, 『동양사학연구』 74(2001); 『宋代 遺囑에 의한 財産相續』, 『중국학보』 46(2002);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동양사학연구』 83(2003); 『宋代 딸의 相續權과 法令의 變化』, 『이화사학연구』 30(2003); 『宋代 ‘共財’概念과 家産所有權』, 『송요금원사연구』 8(2003).

공재를 가부장의 단독 소유로는 볼 수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처분에 있어서 가부, 또는 直系尊屬이 家長인 경우에는 가장의 단독 처분으로만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달리 형제간 공재의 처분에는 형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宋代 딸의 相續權과 法命의 變化』에서는 지참재산은 신부 부모의 가산이 신부 곧 딸 개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남편과 자식 즉 그 딸 부부만의 재산으로 동거공재하는 시부모나 가족들에게 분산되지 않는 사재의 개념으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참재산은 그녀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가정의 재산으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전승된다는 점에서 지참재산을 아들의 빙재와 같은 혼인비용이 아니라 신부 측의 분할상속 재산과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정임이 따르던 滋賀秀三의 지참금을 혼인비용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견해이다.

金銀雅¹⁵⁾는 중국 가족공산의 의의와 동거공재의 성격, 가산분할과 재산 상속 그리고 가산에 대한 가부장의 권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중국 가족제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배숙희¹⁶⁾는 『원씨세범』에 나타난 남송대 강남의 가정 생활의 모습과 사대부이자 지방관이 바라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방침을 통해 송대 가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朴志焄¹⁷⁾은 家訓書를 중심으로 士人 가족 및 동거공재하는 대가족을 다스리는 治家의 전통을 이루기 위해서 송대에서는 실제적인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해 요구되는 여성상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송대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문화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성숙¹⁸⁾은 남송시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재혼과 그로 인

15) 金銀雅, 「前近代 中國의 家族共産制와 家父長의 權能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 12(2001).

16) 배숙희, 「南宋代 江南 家庭 生活의 이상적인 모습-「袁氏世範」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2007).

17) 朴志焄, 「宋代 士大夫의 女性觀」, 『중국학보』 46(2002).

18) 우성숙,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女性의 再婚과 財産問題」, 『법사학연구』 31(2005).

한 재산문제·자식문제에 대한 복잡다양한 면을 이해해 보고자 했다. 우선 송대 여성의 재혼의 양상과 재판의 담당자였던 판관의 가부의 재혼에 대한 인식, 송대 여성이 남편 사후 수절하지 않고 재혼하면서 생기게 되는 권리 변화, 특히 재산상의 권리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재혼한 여성의 지참금부분과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화, 그들이 재산에 집착한 이유를 다루었다. 송대 여성이 재혼을 할 때, 자신의 지참금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산, 심지어 전남편의 재산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송대 가족제도에 있어 재산이 결혼제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내·외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중국 가족제도, 특히 송대 가족제도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이들의 경제적 관념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경제적 관념이 송대 가족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산분할 방식이나 여성의 지참재산의 소유권 등을 통해서도 송대 가족제도의 모습과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가족제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공산, 동거공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宋代史 연구 자체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Ⅲ. 일차 사료

중국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차 사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송대에 와서는 출판,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사대부들의 가훈서가 많이 편찬되고 있다. 송대의 家訓書에는 司馬光의 『司馬氏書儀』와 『家範』, 葉夢得的 『石林家訓』, 袁采의 『袁氏世範』, 朱熹의 『家禮』, 劉清之의 『戒子通錄』, 陸遊의 『放翁家訓』, 眞德秀의 『眞西山教子齋規』, 趙鼎의 『家訓筆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북송대 사마광이 쓴 『家範』은 남송대에 조정의 『家訓筆錄』이나 원채의 『袁氏世範』에서도 인용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

도 인구에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袁采의 『袁氏世範』은 전통시대의 가정의 규모나 구성원, 그리고 이들의 생활 윤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서 族規나 家訓 같은 類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조정의 『家訓筆錄』에는 不動産은 同族 전체의 共有라고 보았고 그 수익을 族人 전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대가족의 결합을 유지하면서도 동산은 자손의 各房에 均分하고 자손의 任官 등에 의한 수입도 각 방의 私産으로 할 것을 정해 둔 모습이 나타나 있어 남송대 동거공재의 현실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名公書判清明集』 13세기 후반 즉, 남송후기 路의 사법감독관이었던 提點 刑獄을 비롯하여 提舉常平이나 知府·知州·知縣 등과 같은 판관들의 판결을 모아 놓은 판결집이다. 판결문의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혼인과 상속, 부동산 거래 외 채무 등 주로 민사적 분쟁과 관련된 것과 관료와 서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계된 것, 세와 역의 부담을 둘러싼 문제, 승려와 군인의 범죄, 호민과 형세호 등과 같은 재지 실력자가 야기한 형사적 사건, 민간의 종교와 종겨 결사에 관계된 안건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사적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들어있는 戶婚門에서는 혼인과 상속, 부동산 거래와 채무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원들 간의 갈등과 갈등의 원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名公書判清明集』은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南宋代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IV. 공동생활을 중시하였다

“家”를 구성하는 가정과 가족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중시하였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는 “父子一體”, “分形同氣”의 사상이 중국인의 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家族共產制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가족 공산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同居共財라는 개념은 중국의 가족제도 와 상속제

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고대부터 王道敎化의 실천으로 간주된 가족형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사망 이후에도 형제가 동거공재하는 大家庭이었다. 동거공재가 오랜 세대 지속되는 소위 累世同居의 대가정이 최고의 理想이었다. 단순히 공동 회계를 유지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공동의 자산 이외에 각 家族員이나 각 房이 사재를 갖지 않고 전적으로 공동경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공재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家라는 집단이 곧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도록 하는 제도였다.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것 외에 수입을 숨기지 않고 개인재산 축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재의 기본 규율이며 요구였던 것이다.

가장이 사망하거나 형제 가운데 누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공재 관계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동거공재 관계의 단절은 그 관계의 근거가 되었던 同籍과 공재를 해제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였다. 別籍과 異財라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공재가정의 재산은 계속하여 共財關係에 있는 가족의 공동재산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同居共財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生産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원 각자의 노동의 소산은 모두가 전원을 위한 단일의 공동회계 즉 가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동거공재라는 개념의 핵심이자 동거공재라는 원리의 근본적 요청이다. 따라서 비록 가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다른 業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계담당자에게 보내야 하며, 수입을 감추거나 개인재산을 축적할 수는 없다.

둘째 消費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원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모두 가의 공동회계에서 지출된다.

셋째, 가산을 공동으로 保存하고 維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과 소비를 가족구성원 공동의 회계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家産으로 축적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동거공재의 유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宋

代는 唐末 五代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당송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술의 발달, 인구의 증가와 상업과 도시의 발전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회가 늘어났고, 이로 인한 지리적, 사회적 유동성이 커져갔다. 특히 소규모 토지를 가진 자영농 계층이 두터워지고 사유 재산 개념이 강해짐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재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달라졌으며 공재 가정의 가족들 간에도 직업이나 소득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의 성실도는 다르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수입액과 소비량에 차이가 나므로 공동회계를 유지하는 동거공재는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송대가 되면 중국의 가족제도인 동거공재의 원리가 조금씩 무너지고, 공동 가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물론 교화와 강제조치에 의해 동거공재의 관념이 확산되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재 가정에서는 가족 각자의 力量이나 경제적 寄與度에 관계없이, 가산에서 동등한 惠澤을 받았으므로 공재 체제에 경제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공재 생활 중에는 일용품과 생계비용이 개인별로 분배되는 셈이지만 상속제도는 각 兄弟別 또는 支派別로 均分하므로, 두 제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이 문제가 되었다.

가정 내에 동거공재를 유지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 일찍이 分家하여 자식이 각자 生業을 찾도록 했으며 합법적 別籍異財는 물론 不法的 분가도 不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송대에는 부모생전 別적이재에 대한 강한 제재와 司法을 담당한 사대부 관료들의 교화 노력이 작용하여 대부분의 가정은 父母喪을 치른 후에 재산을 分割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에 의한 이재는 합법적이었으므로 부모가 生存해 있을 때라도 호적만 같이 기재하고 실제로 재산은 분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동거공재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지도층의 노력과 別적이재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송대 사회에서 형제의 동거는 물론 父子 共財의 실천도 쉽지 않아 눈을 속여 가며 別籍,

異居, 分析이 早期化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공재관계를 종식하게 되는 사정은 다양하지만 원칙상 가산분할을 청구하고 실현할 권리는 父母 생존시에는 父親, 그 다음 母親의 순서로 주어지고, 兄弟가 공재하에 있었다면 형제 가운데 누구라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형제 사이 또는 叔姪 사이에 재산 분배를 정하게 되므로 公正과 均平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고, 본격적인 分家 과정에서는 公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중국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학자 中田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中田薰¹⁹⁾은 중국 가족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족공산제를 당송시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가족공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父子는 가산을 공유하는 자라는 생각이 과연 最古法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공동재산제에서 영향을 받아 발생한 후세의 산물인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당송시대의 가족공동재산제를 부자간의 공동재산에서 시작해 그 직계비속 사이에 이르렀다고 추정했다.

V. 결론

국가에서는 정신적인 표창을 내리면서 누세동거 가정을 적극 장려하고, 경제적 원조를 통해 와해 직전에 있는 가족의 재건을 돕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농지 개간, 유민의 정착, 농업기술 향상의 추진은 송대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다. 농업의 발전을 시작으로 하여 송대는 쌀 생산과 함께 보리·콩 등 잡곡의 생산도 증가하였고 그 잉여물은 상품작물로 활용되었다. 활발한 상품작물의 재배는 송대의 상업발전과 수공업의 발전, 도시의

19) 中田薰, 『唐宋時代の 家族共産制』, 『법제사논집』 3(1943).

변영으로 이어지는 商業革命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변영을 거치면서 발달한 화폐경제는 고대부터 중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동거공재의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세습 가산이 아닌 스스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렇듯 私財의 범위가 늘어나고 공재개념이 점차 알아지면서 중국의 가족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동거공재의 변화가 중국 가족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동거공재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심도 있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송대 뿐 아니라 명·청 시기의 중국 가족제도까지도 아울러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기를 바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다방면으로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